## 연구윤리규정

제정 2010.12.13 개정 2012. 3. 1 개정 2022. 5.16

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'본교' 이라 한다)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 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.
- 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본교 소속의 교원, 연구원,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(이하 '연구자'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##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

#### 제1절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역할

- 제4조(연구의 진실성)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(연구의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의 결과 보고 및 발표, 연구 심사 및 평가행위 등)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,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.
  -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)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중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하다.
- 제6조(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)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 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.

제7조(관련 법규 준수 의무)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.

### 제2절 연구의 기록, 보고 및 보관

- 제8조(연구 과정·결과의 기록, 보고 및 보관) ① (기록)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교의 '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'을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.
  - ② (보고 및 보관)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의 결과를 연구 종료 6개월 이내 연구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, 연구노트의 종류, 작성,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및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(개정: 2022.5.16)

#### 제3절 연구책임자의 책무

- 제9조(책임범위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지출, 직원교육, 데이터 수집·보고,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  - ②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.
  -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,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.
  -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,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제10조(안전관리의무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실에서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, 연구자들이 본교 '실험실 습실안전관리규정'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.
  -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 점검,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,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,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.
  -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, 가스폭발, 감전, 유해 화학물질·실험폐기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 제3장 연구 부정행위

제11조(부정행위) '연구 부정행위'라 함은 다음의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, 연구 의수행,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·변조·표절·부당한 논문저자 표시·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.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·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이에

해당한다. 다만,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1. (위조) '위조'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(변조) '변조'는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 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3. (표절) '표절'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가.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저작물 혹은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에 대한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,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.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.
- 나.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 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. 이는 사용언어, 문장 및 표현(그래프, 도표, 그림, 사진 등)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.
- 다.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(主)가 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된다.
- 라.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 또는 저작물에서 연속적으로 2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된다.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.
- 마. 연구계획서 작성 시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된다.
- 바.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 혹은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 하여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아이디어(지적 재산) 표절에 해당된다.
- 사. 이미 발표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전문 교과서에서 출간되어 전문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도 인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4. (부당한 논문저자 표시) '부당한 논문저자 표시'라 함은 연구 결과 혹은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는 경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되나 이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.
- 가. (저자 자격 기준)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. 연구를 계획하거나, 자료의 수집,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, 학문적으로 주요한

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,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. 단순히 연구비 수주, 자료 수집,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다.

- 나. (저자 표시 순서)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이는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.
- 다. (저자의 소속 표시)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 함을 워칙으로 한다.
- 라. (교신저자)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.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.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서 확인 받아야 한다.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5. (자료의 중복사용) '자료의 중복사용'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 혹은 출판을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는 경우 자료의 중복사용에 해당되나 이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.
- 가. (중복게재)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 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. 또한,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의 문 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. 중복게재는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해당되며 학위논문, 연구 결과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.
- 나.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. 단,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에 대하여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다.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,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라.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(letter, communication)을 출판한 후에 연구 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(full paper)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. 단,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들에 대해 적절히 인용하여야 한다.
- 마. (다른 언어 사이의 중복게재) 학문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.
- 바. (조각출판) 동일한 가정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데이터 중 부분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는 조각출판(Salami publication)으로 자료의 중복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.
- 사. (논문의 중복 투고)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, 처음 투고한 학

술지 게재가 거부되거나 논문의 게재가 철회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.

- 6. 이외에도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. (개정: 2022.5.16)
- 7.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(신설: 2022.5.16)
- 8.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·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(신설: 2022.5.16)

### 제4장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

- 제12조(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5인~15인 내외의 위원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며,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가 겸직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· 의결 한다.
  - 1.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
  - 2.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
  - 3.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
  - 4.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
  - 5.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
  - 6.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
  - 7.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  - 8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(개정: 2022.5.16)
- 제13조(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 ① 제보자는 연구관리부서에 구술서면·전화·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,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제14조(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)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, 조사 시작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. (개정: 2022.5.16)
  -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.
  - 1. 제보내용이 제11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  - 2.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
  - ③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- 제15조(예비조사 결과의 보고)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 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.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.
  -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  -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
  - 3.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
  - 4. 기타 관련 증거 자료
- 제16조(본조사 착수 및 기간)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2.5.16)
  -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조사위원회의 구성) ① 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(위촉)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  - 1.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함
  - 2.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% 이상으로 하되,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(개정: 2022.5.16)
  -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,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)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·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  -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,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.
- 제19조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)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  - ② 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.
  -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,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④ 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·간접 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 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- 제20조(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)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
제21조(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 보고서(이하 '최종보고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
-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
- 3.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의혹의 사실 여부
- 4. 관련 증거 및 증인
- 5.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
- 6. 조사위원 명단
- 제22조(판정)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다.
  -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

- 제23조(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) ①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,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1.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
  - 2.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  - 3.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제24조(결과에 대한 조치)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의 별도 의결에 따른다.
- 제25조(기록의 보관 및 공개)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관리부서에서 보관하며, 음성, 영상,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2.5.16)

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, 제보자·조사위원·증인·참고인·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# 제6장 이해 상충

- 제26조(금전적 이해상충)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.
  - ② 연구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학교와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,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- 제27조(헌신의무의 상충) ① 연구자는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담당할 때 한 직무의 수행이 다른 직무의 수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과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.
  - ② 교수로서의 의무이행과 외부활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시간과 지적 에너지는 교육, 연구, 학술활동, 학생지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  - ③ 교수로서의 기본의무인 교육 및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외부활동이나 연구수주를 피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상충문제 관리의무) 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 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.
  - ②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상 충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  - ③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하고,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점검해야 한다.
  - ④ 이해 상충이 있는 연구자는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정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